

|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명 칭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납입자본금 규모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구성주주의<br>법인명 또는<br>성명 1) | 법인등록번호<br>또는 생년월일 | 주식소유사항 |     |    | 유형 2) | 주요업종 3) | 특수관계여부<br>등 4) | 소유제한<br>관련 5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주식수    | 출자액 | 비율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100%   |     |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## 작성요령

- 1) 법인명 또는 성명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,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(이하 같다).
- 2) 유형란에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자회사·합명회사·정부투자기관(정부소유비율 %)·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(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%)·정부출자기관(정부 소유비율 %)·외국법인·비영리법인·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,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.
- 3)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(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)을 기입하고,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. 다만,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소유제한과 관련된 업종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입할 것.
- 4) 구성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특수관계(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)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의 내용(예, (주)○○○의 임원)을 표기할 것.
- 5)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조 이상 기업집단,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,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, 정당법에 따른 정당,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할 것.

※ 허가신청법인은 모든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.